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020. 7.

농 림 축 산 식 품 부 (정보통계정책담당관)

1. 개정(제정) 이유

등록번호(농어업경영체 및 농어업인)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대내외 활용을 높이고,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

2. 주요내용

- 가. 등록번호(경영체등록번호, 농어업인등록번호) 법적 근거 마련(안 제4조제3항 신설)
 - 등록번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책대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 추진
- 나. 부정한 등록에 의해 말소된 경우 재등록 제한 기간 설정(안 제6조의2제4항 신설)
 - 거짓이나 부정하게 등록하여 말소된 자는 일정기간(1년) 등록을 제한하여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

3. 관련 예상쟁점

가. 관계부처 입장: 해당없음

나. 관련 단체 등 입장 : 해당없음

다. 쟁점 대응방안 : 해당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추진일정

1) 제·개정안 확정 : '20년 7월

2) 관계부처협의 : '20년 7월

3) 입법예고 : '20년 7월

4) 규제심사 : '20년 9월(사전규제심사, '20년 7월)

5) 법제처 제출 : '20년 9월

6) 공포 : '20년 10월

나. 규제관련 검토사항 : 해당없음

다. 재정수반 여부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1) 개정안, 별첨

2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3) 법안담당

직 위	성 명	사무실 전화	HP	E-mail
정책기확관	박범수	044-201-1301	010-7276-7490	parkingss@korea.kr
정보통계정책담당관	이원석	044-201-1401	010-5009-7987	gemstone@korea.kr
시무관	최상만	044-201-1410	010-9361-2469	40103ch@korea.kr
주무관	소순우	044-201-1416	010-8648-5346	swso@korea.kr

법률 제 호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1항 및 제2항"을 "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"으로, "작성·관리 등"을 "작성·관리 및 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"으로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 경영체별,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(이하 "등록번호"라 한다)를 부여할 수 있다.

제6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	제4조(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) ①
• 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
	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
	등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하여
	경영체별, 개인별로 고유한 등
	록번호(이하 "등록번호"라 한
	다)를 부여할 수 있다.
<u>③</u> <u>제1항 및 제2항</u> 에 따른 농어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
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	
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	
<u>작성·관리 등</u> 에 필요한 사항은	작성・관리 및 등록번호의 부여
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	<u> 방법 등</u>
산부령으로 정한다.	
제6조의2(등록정보의 정정 또는	제6조의2(등록정보의 정정 또는
말소) ① ~ ③ (생 략)	말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이
	말소된 농업경영체는 등록이 말
	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
	하면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
	<u>수 없다.</u>